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3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
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6.8.3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선희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법령 표기 형식 및 관계 조문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법령 표기 형식 수정 (안 제7조제2항제10호)
- 관계 조문 수정 (안 제9조)
-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(부칙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동 조례안은 마포구 성산로 128번지(옛 구청사 부지)에 건립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추진 부서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이 한시기구로 2016. 12. 31. 로 존속기한이 되어 있으나, 건물 준공은 2017. 8. 15. 예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. 6. 30. 까지 연장하고,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낫표(「)를 붙이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내용으로는

가. 안 제7조(도시환경국)제2항제10호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법규명에 「」기호를 삽입하고

나. 안 제9조(설치) :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령을 올바르게 수정함

다. 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

구 분	변경내용(부칙 제2조)
당 초	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변 경	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.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는 2016. 8. 4 ~ 8.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나, 2015. 5. 20. “2014년 행정자치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” 결과 당초 사업기간이 2013.

4월 ~ 2016. 12월에서 2014. 4월 ~2017. 12월로 변경되었고, 또한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물이 2017. 8. 15.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건물 준공이후 시설물 준비와 조직운영 등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규정에 따라 동(同) 조례 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4. 4. 1. ~ 2016. 12. 31.까지 => 2018. 6. 30. 까지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(도시환경국)에서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제목에 낫표(「)기호를 삽입하고,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예에 따라 안 제9조(설치)에서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” => “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로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령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이번조례 개정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